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3. 12. 1.>

영업의 폐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		즉시

신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)	생년월일
	주소	
영업소	종류	업소명
	소재지	
폐업일	년 월 일	
폐업사유		

영업등록증 분실사유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

첨부서류	영업등록증(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) ※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수수료 없 음

참고사항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(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)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(세무서로 송부)	→	검토	→	결재	→	통보
신고인				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